# 외출・외박 규정

### 2024년 경기외고 외출・외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 시행하고자 합니다.

- 외출, 외박 규정은 평일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 교외 모든 외출, 외박은 담임선생님께 승인(학부모 확인)을 얻은 후 가능하다
- 출교 시 보안실에서 리로스쿨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귀교 시 보안실에서 리로스쿨로 확인을 받은 후 생활관 행정실에 서류 제출 및 귀교 확인을 받는다
- 외출 시 지정된 시간을 넘길 경우와 사유를 조작할 경우 벌점이 부여되며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할 경우에도 벌점이 부여된다
- 병원 방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에도 벌점이 부여된다.
- 일과 중 외출, 외박 확인은 담임교사가 직접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

# ① 평일 외출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16시 30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하며(시험기간에도 동일) 특별한 행사로 일과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 학년 팀장교사, 생활안전지원부 부장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외출이 가능하다.

16시 30분 이후 위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조사에는 외출 추가 승인이 가능하며 생활관 행정실에 확인(부모 확인)을 받고 담임에게 내용을 전달한 후 외출한다

허용되는 평일 외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병원외출 병원방문확인서(의사의 진단서/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 담임교사가 인정한 경우 병원 방문이 가능하다. 이때 담임교사는 부모와의 확인 후 리로스쿨에 기재한다. 외출은 두 시간만 허용한다

(리로스쿨 -> 알림신청- > 외출신청)

정규수업 종료 전 : 담임교사(리로스쿨에 입력)->보안실(리로스쿨 확인)

정규수업 종료 후 : \*응급 상황에만 해당

보건교사(리로스쿨에 입력)->보안실(리로스쿨 확인)

- 귀교 후 : 보안실 확인->병원방문확인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리로스쿨 입력)
- 병원방문확인서에는 반드시 해당 병원의 직인이 필요하다. 병원방문확인서에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을 받아오거나 병원 방문 신청 후 약국을 방문하여 확인증을 받아온 경우, 허위외출로 처리하며 허위외출로 확인될 시 생활관 규정에 따라 벌점이 부여 된다.
- 병원외출 후 증상의 경중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외박으로 변경 가능하다.
- 물리치료와 같은 장기치료 및 주기적 치료도 당일 확인서를 제출한다(악용사례방지)

# ㄴ) 학부모 방문 외출

학부모가 담임 및 생활관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였을 때만 가능하다. 1회 외출 시 2시간 외출이 가능하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벌점이 부여된다. 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할 경우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 □) 동아리 외출(봉사외출 포함)

- 동아리 외출(이하 봉사외출 포함)이 필요한 경우 미리 외출 양식을 작성하여 동아리 담당교사 혹은 생활안전지원 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임에게 제출한다
- 동아리 식사 외출은 담당 지도교사가 귀교할 때까지 동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 □) 경조사 외출

경조사 외출의 경우 담임선생님의 확인(일과 후 포함) 후 외출이 가능하며 귀교 시 확인 증 및 증빙서류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한다. (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a) 대회·시상 외출

대회·시상을 위해 외출해야 할 경우 담임선생님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공문의 사본을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ㅁ) 학원 외출(고3 해외대학 진학 준비자, 예체능 진학 준비자만 가능)

- 사전에 담임에게 학원 수강증을 제출하고(학부모 확인) 학교 결재를 마친 학생에 한 해 학원 외출이 가능하며 시간은 학원 수강 시간에 맞게 신청해야 한다.
- 과외의 경우 과외 요일, 시간과 강사 연락처가 명시된 수강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강증 제출은 수강 전달 일주일 전에 미리 제출한다.

## ② 평일 외박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16시 30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하며(시험기간에도 동일) 특별한 행사로 학과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 학년 팀장교사, 생활안전지 원부 부장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외박이 가능하다. 16시 30분 이후 위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조사에는 외박 추가승인이 가능하며 생활관 행정실에 확인(부모 확인)을 받고 담임에게 내용을 전달한 후 외박한다

허용되는 평일 외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ㄱ) 병원외박 병원방문확인서(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 보건교사의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응급 상황일 경우에만 외박이 가능하다. 반드시 담임에게 외박승인(학부모 허가)을 받아야 한다.

(리로스쿨 -> 알림신청- > 외출(외박)신청)

정규수업 종료 전: 담임교사(리로스쿨에 입력)->보안실(리로스쿨 확인)

정규수업 종료 후: \*응급 상황에만 해당

보건교사(리로스쿨에 입력)->보안실(리로스쿨 확인)

- 귀교 후: 보안실 확인->병원방문확인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리로스쿨 입력)
- 병원방문확인서에는 반드시 해당 병원의 직인이 필요하다. 병원방문확인서에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을 받아오거나 병원 방문 신청 후 약국을 방문하여 확인증을 받아온 경우 허위 외박으로 처리하며, 허위외출로 확인될 시 생활관 규정에 따라 벌점 처리한다.
- 병원 외박을 신청한 후 외출로 복귀할 경우 벌점이 부여된다.
- 장기 외박할 경우 생활관 행정실에 퇴사 신청할 수 있다(퇴사신청서, 진단서 등 제출)

#### ㄴ) 경조사 외박

경조사 외박의 경우 담임선생님의 확인(일과 후 포함) 후 외박이 가능하며 확인증 및 증 빙서류를 제출한다. (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 체험학습 외박

담임 선생님의 승인 후 외박이 가능하다. 체험학습 신청서 내부결재 담임교사(리로스쿨입력)-> 생활안전지원부 -> 생활관 행정실

## **a) 학원 외박(고3 해외대학 진학 준비자, 예체능 진학 준비자만 가능)**

- 사전에 담임에게 학원 수강증을 제출하고(학부모 확인) 학교 결재를 마친 학생에 한 해 학원 외박이 가능하다.
- 과외의 경우 과외 요일, 시간과 강사 연락처가 명시된 수강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말 잔류학생 외출

#### ㄱ) 병원외출

- 주말 잔류 시 병원 외출은 불가하며 외박신청만 가능하다
- 해당 주말 전 <u>금요일에만</u> 병원 외출을 인정한다. 16시 30분 이전 담임교사가 확인하고 부모님과 통화한 후 외출이 가능하다. 병원방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원방문확인서에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을 받아오거나 병원방문 신청 후 약국을 방문하여 확인증을 받아온 경우 허위 외출로 처리한다. 허위외출로 확인될 시 생활관 규정에 따라 벌점처리 한다.
- 귀교 시: 보안실 확인->병원방문확인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리로스쿨 입력)

## L) 봉사·대회·시상 외출

봉사를 위해 외출해야 할 경우 담당지도교사에게 사전결재를 받은 양식을 생활관 행정실 에 제출한다.

대회나 시상을 위해 외출할 경우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 경조사 외출

경조사 외출의 경우 생활관 행정실에서 확인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전달한 후 외출이 가능하며 확인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④ 주말 잔류학생 외박(금~토)

## 그) 병원외박 병원방문확인서(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 외상 외 병증일 경우 체온 측정을 하고 부모님과 통화한 후 외박이 가능하다.
- 출교 시: 생활관 행정실(학부모 확인-리로스쿨 입력)->보안실 리로스쿨 확인.
- 귀교 시: 보안실 확인->병원방문확인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리로스쿨 입력)
- 병원방문확인서에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을 받아오거나 병원 방문 신청 후 약국을 방문하여 확인증을 받아온 경우 허위외박으로 처리한다. 허위외박으로 확인될 시생활관 규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 ㄴ) 경조사 외박

경조사 외박의 경우 생활관 행정실에서 확인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전달한 후 외박이 가능하며 확인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⑤ 공휴일 외출

공휴일의 경우 병원 외출, 결재 완료 된 학원 외출, 경조사 외출이 가능하다. 생활관 행정실에서 학부모 확인 후 외출한다

#### ⑥ 기타 귀가 귀교 관련 규정

- 학교 잔류 신청(주말)은 해당 주 월요일 12시(정오)까지 리로스쿨로 신청하여야 한다.
- 비잔류 학생의 경우 일요일(귀교일) 학년별 19시부터 귀교 가능하며 23시까지 귀교를 마친다
- 귀교 이후부터는 모든 종류의 외출 불가(응급 상황 시 병원 외출은 가능)
- 외출이 적발될 경우 무단 외출로 벌점이 부여된다
- 매월 학교 일정에 따라 정해진 의무 귀가 일에는 모두 19시까지 귀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21시까지는 모두 귀가하여야 한다. (의무 귀가일, 생활관은 16시부터 18시까지 개방 후 모두 폐쇄 된다.) 이때 16시 30분부터 21시까지 1,2학년(국내반,국제반)은 가플라운지, 3학년은 국내반(자습실) 국제반(글로벌홀)을 이용한다.